

# 전기통신기본법중 개정법률(안)

정보통신부공고 제1996-82호

## 1. 개정취지

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 구축에 대처하여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전문규제기관으로 개편하고, 전기통신연구개발 및 인력양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부설기관을 설치하며, 정보화시대의 핵심기반구조인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, WTO 체제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통신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을 설치하고, 연구소에 산하 연구기관과 부설 대학원,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정보화시대의 핵심기반구조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,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공동구축, 산업단지·도로 등

에 설치되는 공동구·관로 등의 활용, 재난 시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.

- 다. 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 구축에 대처하여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전문규제기관으로 재편하고 상임위원 및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함.
- 라. 전기통신설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제도에 신고제를 도입하고,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제도에 신고제를 도입하고,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관리규정을 신고제에서 사후점검제로 완화함.
- 마. WHO체제에 대비하여 외국과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작품 채택의무 및 전기통신기자재 수급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설비 기종선정제도를 폐지함.
- 바.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함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8조 (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의 채택 등) ① <u>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종을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종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8조 (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의 채택 등) ① <u>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29조 (표준화의 추진) ① <u>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전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.</u></p> <p>② <u>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9조 (표준화의 추진) ① <u>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전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전기통신기자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기통신기자재가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
〈신 설〉	

현 행	개 정(안)
<p>〈신설〉</p> <p>제30조 (<u>한국통신기술협회</u>) ①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한국통신기술협회</u>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</p> <p>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.</p> <p>④ <u>체신부장관</u>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30조 (<u>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</u>) ①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</u>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현행과 같음</p> <p>④ <u>정보통신부장관</u>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⑤ 현행과 같음</p>

TTA